

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및 압류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5. 14.

파 주 시 장



1. 공 고 명 :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5. 14. ~ 2026. 5. 29. (15일간)
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5. 공고내용: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)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독촉), 「국세징수법」 제10조(독촉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(독촉과 최고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.
 - 나.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장 제1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소유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 - 다.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부동산과 부동산정보팀(☎031-940-485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